

Ulrich Manthe · Shigeo Nishimura · Mariko Igimi(공동편집), Aus der Werkstatt römischer Juristen: Vorträge der Europäisch-Ostasiatischen Tagung 2013 in Fukuoka (Duncker & Humblot, Berlin, 2016년, 515면)

서울오 · 이선주 · 이상훈 · 한승수*

이 책은 2013년 3월 25일부터 27일까지 일본의 후쿠오카 공대에서 열렸던 학술행사인 “로마법 콜로키움-로마법 사료의 해석과 환경”에 참여한 동서양의 학자들 25명의 발표 논문을 모아서 정리한 책이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서울대 최병조 교수), 일본, 중국 등 아시아 3개국 및 네덜란드, 독일, 벨기에,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스위스, 영국 등 유럽 7개국 등 모두 10개국에서 온 학자들이 이 학술행사에서 참여했으며, 각 발표는 로마법 사료에 대한 釋義(Exegese)를 주된 내용으로 하였다.

이 책의 대표 편집자인 3인의 교수(울리히 만테, 시게오 니시무라, 마리코 이기미)는 이 학술행사의 취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 서울오(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선주(서울대 서양고전학 박사과정), 이상훈(서울대 법학 박사), 한승수(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하에서 저자를 특별히 밝히지 않은 부분은 서울오가 작성하였다.

로마법은 중부 유럽 및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의 근대 민법의 기초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발표들은 로마법과 근대 민법 사이의 가교를 형성했다. 시게오 니시무라 교수는 3개의 동아시아 및 7개의 유럽 국가들의 로마법 연구자들을 모았다. 그리하여 동아시아와 유럽 사이의 두 번째 가교가 이루어졌다. 행사에는 젊은 학자들뿐만 아니라 연로한 학자들도 참여했다. 이것이 젊은이와 노인 사이의 세 번째 가교였다.

이 책에 실린 25편의 논문들의 주요 내용을 실린 순서대로 간략하게 소개 하자면 다음과 같다.

1. Frits Brandsma(네덜란드 그로닝엔 대학), “간통에 관한 율리우스법 이래로 로마인들에게 혼인의 요식행위가 존재했는가? D. 24,2,9에 대한 논평
Gab es eine Form der Ehescheidung bei den Römern seit der lex Iulia de adulteriis? Einige Bemerkungen zu D. 24,2,9”

통설에 따르면 로마의 자유혼은 방식을 요구하지 않았고 이 점은 이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반면 수권(manus)혼, 공매혼(coemptio)에 있어서는 혼인 성립과 이혼에 있어서 방식이 요구되었다. 그런데 D. 24,2,9에서 파울루스는 이혼에 방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텍스트는 전통적으로 Levy의 견해에 따라서 manus혼의 경우로 이해되었고, 이에 대해서는 몇몇 반론이 있었다.

저자는 통설인 Levy의 견해 및 그 반론을 검토함에 있어서 특히 바실리카 법전(Basilica) 및 그 주해(scholia)를 참조하고 있다. 그리하여 저자는 텍스트의 진정성을 의심한 Levy의 입장과는 달리 파울루스의 견해가 고전기법을 충실히 서술한 것이며, 바실리카 법전 및 그 주해도 이 입장을 유지하였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2. 최병조(서울대), “루틸리아나 사례에 대한 논쟁에 관하여. 우리는 텍스트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Zur Debatte um den Rutiliana-Fall (Paul. D.

4,4,38 pr.). Wie soll man einen Text lesen?”

이 글에서 저자는 ‘루틸리아나 원상회복 사건’으로 알려진 로마법 개소 (Paul. D.4.4.38.pr.)를 흥미롭게 풀어나가고 있다.¹⁾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 매매대금 지급 불이행시 매도인에게 계약해제권을 유보하는 특약(*lex commissoria*)을 두었다. 그 후 매수인이 사망하고 그의 어린 딸인 루틸리아나가 아버지를 상속하였는데 매도인이 수차 대금지급을 최고하였지만 공동후견인들이 여전히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매도인이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해 버린 사안에서 어린 소녀 루틸리아나가 원상회복(*in integrum restitutio*)을 신청하였다.

1심과 2심에서 이를 불허하였고, 최고심인 황실 고문회의(*consilium principis*)에서 당대를 대표하는 법률가인 파울루스까지도 엄격한 법논리에 따라 불허의 입장을 개진하였으나 최종적으로 황제가 이러한 결론을 뒤집고 원상회복을 부여하였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아마도 황제가 신청인의 미모에 마음이 동하였을 것이라는, 중세의 한 주석가에 의해 각색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그리고 1970년대에 독일의 저명한 두 로마법학자들 사이에 이 개소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는데, 저자는 전통적인 노선의 입장에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한 견해를 설득력 있게 반박하고 있다. 관련하여 이 글에서는 황실 고문회의에서의 황제와 황제의 고문법률가인 파울루스의 논변과정을 생생히 재연해냄으로써 제정기 로마 재판과정에서의 황제의 지위와 법률가의 역할의 문제도 함께 다루고 있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이 개소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사안에 등장하는 신청인의 미모 여부가 아니라 로마법률가들이야말로 공적 담론의 장(*disputatio fore*)에서 엄정한 법논리로 사안을 해결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글을 맺고 있다. [이상훈]

3. Thomas Finkenauer(독일 튀빙엔 대학), “로마법상 유상 위임 Das

1) 이 논문은 최병조, “법 앞에 ‘얼짱’은 유리한가? 루틸리아나의 원상회복청구사건”, 법사학연구, 제 42호(2010), 5면 이하에 수록된 국문 논문을 독일어로 번역한 것이다.

entgeltliche Mandat im römischen Recht”

일반적으로 로마법상 위임(mandatum)은 무상이 원칙이고 독일민법을 비롯한 근대의 법전들도 이러한 전통하에 있는데, 이 글은 로마법상 과연 ‘유상’ 위임이 존재하지 않았는지에 대하여 파울루스 개소(D.17.1.26.8)를 논구한다.

어떤 工人在 친구의 위임으로 노예 한 명을 10금에 매수하여 직업교육시킨 뒤 20금에 매도한 사안에서, 위임이 무상이라는 원칙에 의하면 수임인인 工人은 위임인인 친구에게 취득물 전부, 즉 20금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어서 이 개소에서는 직업교육시켜서 매도한 노예가 하자(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매도인인 工人이 하자담보책임을 지게 된 후에 위임인과의 관계에서 법률문제를 다루고 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개소의 말미에서 “위임인의 지시로 노예를 교육시킨 경우라면 ... 그가 무상으로 교육시키도록 요청 받은 경우가 아닌 한, 수임인은 보수(merces)도 부양비(cibaria)도 받아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인데, 저자는 여기서 “보수”가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의 의미라거나 당사자 간에 노예의 직업교육에 관한 별도의 계약, 가령 도급이나 고용계약이 맺어졌다고 보는 견해를 비판하고, 사안에서 문제된 계약상의 당사자의 이익상황을 분석하여 당사자 간에 위임계약과 함께 별도의 부가약정(pactum adiectum)이 붙어서 이에 근거하여 성의소송(bonae fidei iudicium) 내에서 보수 청구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견해는 로마법상 계약법정주의에 반하지 않고, 오히려 로마법상 당사자들은 이러한 부가약정을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바(quod actum)를 실현하였다고 본다. 그리고 이를 통해 로마법률가들은 자신들의 법체계를 유지하면서도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당사자 간의 합의와 이익상황을 고려하여 사안을 판단하고 있음을 예증적으로 밝히고 있다. 일반적으로 계약자유원칙은 근세 자연법학과에 의해 달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미 고대 로마 시대에 당사자들은 법정된 계약유형을 선택하고 여기에 다양한 부가약정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하며 다양한 법률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었다는

점에서 계약자유가 구현된 사회였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훈]

4. Seiji Fukuda(일본 고마자와 대학), “보증위임의 내용: D. 17,1,38 Marcell. 1 resp.에 대한 중세의 학설대립 Der Inhalt des Bürgschaftsauftrags: eine Meinungsverschiedenheit über D. 17,1,38 Marcell. 1 resp. im Mittelalter”

이 글은 수탁보증인의 주채무자를 상대로 하는 사전면책청구(사전구상권) 사유를 다루고 있다. 주채무자의 부탁(위임)으로 보증인으로 된 자는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그에 기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보증위임은 주채무자에게 신용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따라서 보증인이 보증채무의 이행을 하면 주채무자를 상대로 위임반대소권으로 사후적으로 면책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주채무자와 보증인 간에 종료사유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보증인의 보증채무 이행 없이도 주채무의 이행기의 도래 또는 일정기간의 경과만으로 보증인에게 사전면책청구권이 발생하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비교법적으로 상이한 태도가 나타나는데, 프랑스법의 영향을 받은 일본법의 경우(동법 제460조 제2호 및 제3호) 이를 인정하지만(이는 우리 민법도 마찬가지이다. 제442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독일민법은 이행기 도래만으로는 면책청구가 인정되지 않고 주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질 것까지 요구한다(동법 제775조 제1항 제3호). 양자의 차이는 보증계약 이후에 채권자가 이행기를 유예한 경우 침해화되는데, 전자에 따르면 채권자의 기한 유예로써 주채무자는 보증인에게 대항하지 못하지만(일본민법 제460조 제2호 단서와 우리 민법 제442조 제2항은 이를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다), 후자에 따르면 채권자의 기한유예가 있으면 보증인의 면책청구는 인정되지 않게 된다.

저자는 이러한 비교법적 차이가 이미 중세시대 법률가들 사이의 견해대립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것이 보증위임계약에 관련된 당사자들의 의사 해석(즉, 보증인의 책임범위)과 이와 관련하여 위임반대소권의 적용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었음을 밝힌다. 저자는 이러한 보증위임계약에서 보증인의 보호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특히 보증위임계약이 무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기간 경과만으로 보증인을 보증채무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일본의 입법례를 지지한다.

흥미로운 것은 저자가 인용한 로마법 개소(Marcell. D.17.1.38.1)에서 로마의 법률가 마르켈루스는 보증인의 사전면책청구가 인정되는 경우로 주채무자가 장기간 변제를 중단할 경우(*diu in solutione reus cessabit*) 또는 주채무자가 확실히 자신의 재산을 탕진할 경우(*certe bona sua dissipabit*), 그리고 보증인이 가내에 현금이 없을 경우(*si domi pecuniam fideiussor non habebit*)를 언급하고 있는데(세 경우 모두 동사가 미래형임을 유의!), 결국 주채무자가 실제로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더라도, 현실적으로 재산을 탕진하지 않더라도, 나아가 단지 보증인의 자금사정이 악화될 경우 보증인은 이를 이유로 주채무자를 상대로 사전면책청구를 할 수 있게 되고, 이로써 보증위임계약에서 보증위임인의 보호를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증위임계약이 무상이고 보증인은 어디까지나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을 서게 된 자라는 점에서 이러한 해석과 입법례는 타당해 보이고, 주채무자의 이행지체까지 요구하는 독일의 입법례는 채권자 보호에 치우친 것으로 보인다. 수탁보증인의 사전면책청구 사유에 있어서 일본법과 우리 민법의 태도가 더 “로마법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상훈]

5. Jean-François Gerkens(벨기에 리이쥬 대학), “고고학자로서의 페르낭 드 비셔 Fernand De Visscher als Archäologe”

상기 논문은 로마법학자로 알려진 Fernand de Visscher의 또 다른 측면, 즉 고고학자로서의 업적을 소개하고 있다. 논문은 2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부에서는 Fernand de Visscher의 출신지인 벨기에 및 그의 특별한 가족사(예를 들어, 조실부모, 형제이자 국제법학자인 Charles de Visscher와의 유사한 경력 등), 제1·2차 세계대전 전후 학계에서 그의 위치와 더불어 “Société Internationale d’Histoire des Droits de l’Antiquité (SIHDA)”의 창

립배경이 간략히 소개되며, 또한 1946년 이후 고고학자로서 Alba Fucens에서의 임무수행시 겪은 고충이 언급된다.

논문의 제2부에서는 Alba Fucens에서의 발굴이 다뤄지는데, 먼저 Alba Fucens의 역사가 짧게 서술된 후, 거기서 발굴된 코끼리 형태가 조각된 석회암에 관한 설명이 이어진다. Alba Fucens의 역사는 기원전 3세기 무렵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기원전 304년 삼니움족과의 전쟁에서 평화조약을 체결한 로마는 기원전 303년 Alba Fucens를 가장 중요한 로마 군사식민시로 만들었는데, 이 도시는 제 2차 카르타고 전쟁에서 한니발이 코끼리 군단을 이끌고 로마와 전쟁을 벌일 때, 식민시 중 유일하게 로마에 지원군을 보낸 곳이며, 기원전 90년에는 로마시민권 및 자치권을 부여받은 곳이다. 하지만 기원후 3세기 무렵 Alba Fucens의 위세는 사라지며, 중세에는 작은 마을로 명맥을 유지하다가, Fernand de Visscher가 도착할 때는 이미 1915년 지진으로 완전히 파괴된 후였다. Alba Fucens에서 발굴한 많은 유적으로 인해 Fernand de Visscher는 이탈리아에서 “cultor di Roma”라는 명예를 얻는다.

상기 논문은 여러 발굴 중 그가 1951년 발굴한 코끼리형태가 조각된 석회암 2개에 대한 설명에 집중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Fernand de Visscher는 그 석회암 2개를 긴 의자에서 떨어져 나온 부분이라 추정하고, 특히 당대 조각가가 커다란 귀를 가진 그 코끼리의 모습을 얻게 된 배경에 관심을 두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프리카 코끼리의 귀로서, 작은 귀를 가진 아시아 코끼리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코끼리에 대한 문헌은 우선 가이우스의 법학원론(Institutiones) 2,16이 있는데, 거기서는 코끼리라는 동물은 로마인이 악취물(res mancipi)의 종류를 지정할 당시, 즉 로마 초기에는 이름이 없었다고 설명된다. 플리니우스가 전하는 바로는, 기원전 280년 Epirus의 퀴로스 왕이 로마를 침공했을 때 끌고 온 코끼리가 로마인들이 처음 코끼리를 본 시점으로, 로마인들은 그 이름을 몰라 ‘루카니아의 황소’라 칭했다고 한다.

Fernand de Visscher는 퀴로스의 코끼리는 아시아 코끼리라고 주장하는 바, Villa Giulia에 소장된 퀴로스의 코끼리가 그려진 접시에 등장하는 코끼

리는 귀가 작기 때문이다. 한편 Fernand de Visscher는 제 1차 포에니 전쟁 당시의 일회적 기억으로는 아프리카 코끼리를 조각할 만큼의 충분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추정하였다.

이와 달리, 공공극장에서 개최된 "Venationes"에서 코끼리가 사용되지 않았을까하는 가설도 있지만, Alba Fucens에 큰 극장이 생긴 것은 기원 후 1세기 무렵이며, 그 이전 시기에 그만큼 극장이 있었다고 고가의 코끼리를 축제에 사용할 만한 경제적 여력은 없었다고 보는 측면이 더 타당하다. 결과적으로 Fernand de Visscher는 제 2차 카르타고 전쟁에서 이탈리아를 쫓고 지나간 코끼리가 Alba Fucens 코끼리 조각의 모본이라고 주장한다.

기원전 216년, 로마군대에게 카푸아를 빼앗긴 한니발군대는 카푸아 탈환이 여의치 않자 로마 시로 전진한다. 한니발군대의 경로에 대해서 두 가지 설이 있다. 우선 리비우스는 Via Latina를 통해 한니발군대가 북쪽으로 전진했다고 보고하나, 그 길을 통과하는 경우 수많은 親로마 도시들을 거쳐야 한다는 난점이 생긴다. 폴리비오스는 한니발군대가 삼니움을 통해 이탈리아 중부를 통과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자세한 경로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러나 두 설을 종합하여, 한니발군대가 삼니움을 거쳐 로마에 적대적인 도시들을 통과했다는 가설을 세워볼 수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양편의 군대가 Anio 강 양쪽에 대치하던 중, 로마군이 다리를 끊어 한니발군대는 Ager Albensis(=Alba Fucens)를 통과하여 로마로 진격하는데, Fernand de Visscher는 바로 이 때 코끼리를 본 경험으로 Alba Fucens의 조각가가 작업을 했다고 추정한다.

이에 대해 Antonio Guarino는 회의적인 입장으로, Guarino에 따르면 우선 퀴로스의 코끼리가 반드시 아시아 코끼리인 것은 아니다. 이전에 알렉산드로스 왕이 인도 코끼리를 이집트로 가져왔다고 해서, 퀴로스가 이집트에서 인도 코끼리를 가져왔다는 설은 불확실하며, 이집트의 파라오가 아프리카 코끼리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퀴로스는 프톨레마이우스와 친교를 맺고 아프리카 코끼리를 이집트에서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Guarino는 Villa Giulia에 있는 점시그림은 실제 퀴로스의 코끼리를 모사한 것이 아니라

고 주장하는데, 그 코끼리 그림은 작은 귀에 비해 상아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접시 그림에 나오는 코끼리 등에 얹힌 좌대에 관해 Guarino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주장한다. 결국 Guarino는 Alba Fucens의 코끼리 조각을 실물과 상관없이 주화나 이야기에 근거해 만들어진 것으로 결론짓는다.

이에 대해 Fernand de Visscher는 푸로스 코끼리 군단은 프톨레마이우스 왕조가 코끼리를 모으기 전에 있었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접시에 관한 Guarino의 설명에 반대하는데, 아시아에서는 코끼리 등에 좌대를 얹는 것이 관습이었으나, 카르타고에서는 그런 관습이 없었다는 것이다.

논문 저자는 한니발군대의 코끼리가 아프리카 코끼리였고 Ager Albensis를 지나갔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그 사건이 Alba Fucens조각의 원인이라는 데에는 회의적이다. 저자는 Fernand de Visscher의 주장이 다음과 같은 가정, 즉 그 조각기법이 거칠고 단순하므로 가능한 가장 오래전인 기원전 2세기에 제작되었을 것이라는 가정을 확실한 전제로 삼았기 때문에 가능한 추론이라고 평가한다. 이에 덧붙여, 저자는 요즈음 학계에서 주목받는 다른 가설을 소개한다. 그것은 Alba Fucens 인근 도시 Avezzano에서 발견된 石碑에 기인한 것으로, 그 석비는 독재관 술라의 장군인 Cecilius Metellus Pius 수하에 있는 퇴역군인이 헤르쿨레스 신에게 봉헌한 것인데, 거기에는 그가 아프리카출신 용병으로서 Alba Fucens에서 토지를 분배받았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즉 이 비문으로부터, Alba Fucens에는 아프리카 출신 군인들이 거주했으며, 바로 그들이 아프리카 코끼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것이 아닐까하는 가설이 제기된다.

저자는 로마법학자로 알려진 Fernand de Visscher의 고고학적 업적을 소개한다. 비록 상기 논문이 다루는 대상이 직접적으로 로마법과 연결되지는 않지만, 실로 로마법연구에 있어서 고고학과 금석문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사법중심으로 편찬된 로마법대전에 공법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자료는 바로 고고학과 금석문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Mommsen을 비롯해 다른 로마법 학자들의 고고학적 업적을 공유하면서 우리 로마법연구 역시 더욱 풍성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선주]

6. Tomoyoshi Hayashi(일본 오사카 대학), “나는 질문하고 그는 대답한다(quaero, respondit)’ - D. 17,1,59에서의 법적 질의와 해답의 방식에 대한 고찰 및 그 배경 ≫I ask and he gave his opinion≪ (quaero, respondit) - Some Reflections on the Forms of Legal Questions and Responses in D. 17,1,59 and on their Background”

이 논문에서 저자는 로마법대전의 개소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그 형식에 중심을 둔다. D.17,1,59를 간단히 소개하고 그 각 개소에서 쓰이는 동사를 기초로 話者에 대한 관심을 보인다. 따라서 논문의 제목에 위 개소가 명시되어 있지만 대역과 간단한 설명을 넘어서는 그 내용에 대한 본격적인 식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아마 그 내용은 다른 논문에서 다룬 것 같다.

저자는 개소의 내용이 나타나는 상황 즉, 질문이 던져지고 그에 대하여 답변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그려본다. 즉, 1인칭의 quaero(“나는 묻는다”)를 보고, (대답하는 사람은 법률가 Paulus인데) 과연 질문자는 누구인지를 궁금해한다. 이러한 접근은 이 논문이 수록된 책의 제목(“Aus der Werkstatt römischer Juristen”)과 매우 잘 어울린다. 전술한 바와 같이 대답하는 주체는 드러나 있다. 그런데 질문하는 주체에 관하여는 몇 가지 가능성이 있다. 고객이 질문하는 경우, 학생이 질문하는 경우 아니면, 법률가 자신이 自問하는 경우. 위 개소에서 어떤 것이 가장 그럴 듯한 것인가?

저자는 Paulus 및 다른 법률가들의 개소에 나타나는 양상들과 실제 고객들의 질문이나 학생들과의 문답의 경우 나타나는 다양한 형태들을 기초로 quaero가 쓰인 경우에는 법률가 자신이 질문을 정리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가장 정제된 형태로 질문을 구성하여 자신의 논리를 피력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로마법대전의 개소의 내용 자체가 아니라 그를 둘러싸고 있는 외적 양상을 다룬다는 점에서 이 논문은 신선하다. (물론, 로마법 개소에서 법적 판단을 제시하는 화자 즉 ego가 어느 법률가인지는 보다 자주 다루어진다. 누구의 의견인가는 법률가의 성향과 논리를 이해하는 데에 큰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기실 법학이라는 것은 내용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내용을

답는 그릇도 매우 중요하다. 나아가 개소의 내용이 쓰여진 배경은 그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하다. 또한 검색 시스템의 도움으로 이와 같은 연구가 보다 손쉽게 된 점은 고무적이다. 다만, 그 문제가 어느 정도 중요한가에 대하여는 여전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한승수]

7. Mariko Igimi(일본 쿠슈 대학), “로마 일상에서의 선점 *Occupatio im Alltag der Römer*”

저자는 선점이라는 제도의 추상적 의미가 아니고, 그것이 로마 사람들의 일상 생활에서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저자는 우선, 선점과 관련된 학설회찬의 주요 개소들(D. 41,1,1,1부터 D. 41,1,5,6까지)을 검토하는데, 거기에서 주로 문제되는 것은 꿀벌, 비둘기, 공작, 사슴, 물고기 등의 선점인데, 이들 동물은 ‘야생’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분되며 전자는 선점이 가능하고 후자는 그렇지 않다.

이어서 저자는 플라우투스(Plautus)의 희극 *Rudens*에서 어부와 노예가 바다에서 발견된 가방의 소유권을 가지고 다투는 장면을 소개하면서, 이것이 선점의 법리를 통해서만 설명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무주물은 선점자가 취득한다”는 지나치게 일반화된 원리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 법리는 사냥꾼, 어부, 양봉업자들의 활동을 위하여 발전한 것임을 강조한다.

8. Makoto Ishikawa(일본 쿠루메 대학), “일본 민법 제719조와 로마법. 결과적 공동불법행위자 사례에의 적용 가능성 *MINPO § 719 und das römische Recht. Eine Anwendungsmöglichkeit auf den Nebentäterfall*”

일본 민법 제719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공동불법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즉,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각자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공동행위자 중 어느 자가 손해를 가한 것 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우리 민법 제760조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과 완전히 동일하다.

저자는 이 문제에 관한 일본의 판례와 학설을 소개하고 독일 민법전의 유사 규정(제830조 제1항 및 제840조 제1항)과 비교한다. 이어서 저자는 이 문제와 관련된 로마법의 개소들을 검토하는데, 특히 율리아누스(D. 9,2,51 및 D. 9,2,15,1)와 켈수스(D. 9,2,11,3)의 개소들이 서로 모순되는 내용이어서 저자는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시도되었던 여러 해석들을 소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율리아누스의 견해에 따를 때, 협의의 공동불법행위가 아닌 결과적 공동불법행위에는 일본민법 제719조가 적용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9. Sebastian Lohsse(독일 뮌스터 대학), “임치에서의 약정에 의한 책임 가중 Vertragliche Haftungsverschärfung beim depositum”

임치계약에 있어서 수치인은 원칙적으로 고의(dolus)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며, 이것은 수치인 무상으로 보관의무를 부담한다는 이익 원칙(Utilitätsprinzip)에 상응하는 것이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특약을 통하여 이러한 원칙에서 벗어나 수치인의 책임을 가중하는 것은 물론 가능했으나, 로마법률가들이 이를 어느 범위까지 인정했는지에 대해서는 학설의 다툼이 있어왔다.

저자는 이와 관련한 로마법 및 그리스법의 중요한 개소들을 검토하고 난 후, 로마법에서는 특약을 통하여 수치인에게 모든 위험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까지도 가능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10. Ulrich Manthe(독일 파싸우 대학), “Collatio(모세법·로마법 비교집): 내용, 텍스트 비평, 저자 문제 Die Collatio: Inhalt, Textkritik und Verfasserfrage”

이 논문은 모세법·로마법 비교집(Mosaicarum et Romanarum Legum Collatio)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 4세기 말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되는 법서의 전승 과정, 주요 내용, 텍스트 비평 등을 소개한 후, 이 법서의 저자가 누구일지에 대한 논의를 전개한다. 저자의 조심스러운 결론에 따르면, 이 법서의 저자는 Ambrosiaster 아니면 Isaak인데, 이 두 사람은 동일인이라는 것

이 저자의 가설이다.

11. Carla Masi Doria(이탈리아 나폴리 대학), “웅변가 알부키우스 실루스와 ‘특이한’ 살인 소송 Der Redner Albucius Silus und ein »merkwürdiger« Prozess wegen Mordes”

이 논문은 법률 사료가 아니라, 역사가 수에토니우스(Gaius Suetonius Tranquillus)의 ‘문법학자들과 수사학자들에 대하여(De grammaticis et rhetoribus)’를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1세기 후반부에 살았던 유명한 변론가 알부키우스 실루스(Gaius Albucius Silus)가 변론을 담당했던 독특한 형사소송의 전말에 관해 다루고 있다.

12. Wataru Miyasaka(일본 추쿠바 대학), “D. 23,3,67 Proculus 7 epistulae: 로마법에서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적절한 강의 소재 D. 23,3,67 Proculus 7 epistulae: Ein angemessener Lehrstoff in Bezug auf die Übertragung des Eigentums im römischen Recht”

사용취득(usucapio)의 요건은 일반적으로 5가지로 요약된다. 즉, 사용취득이 가능한 물건(res habilis)이어야 하고, 권원(titulus 또는 causa)이 있어야 하고, 선의(fides)여야 하고, 점유(possessio)가 있어야 하고, 사용취득 기간(tempus)을 갖추어야 한다. 이 요건들 중에서 특히 로마법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된 부분은 권원에 관해서이고, 특히 오상권원(Putativtitel)이 권원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심하게 다투어져 왔다. 통설을 대변하는 Kaser와 Mayer-Maly는 로마법률가들 사이의 학설대립을 인정한다. 즉, 어떤 학자들은 오상권원을 권원으로서 인정하였고, 어떤 학자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논의에서 특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개소인 D. 23,3,67 Proculus 7 epistulae를 다루면서, 통설과는 다른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고 있다.

13. Hikaru Mori(일본 추오 대학), “D. 30,86,4: 타물권으로서의 지상권의 기원 D. 30,86,4: Ursprung der superficies als ius in re aliena?”

“지상물은 토지에 속한다(superficies solo cedit)”라는 유명한 법언이 말해 주듯, superficies는 원래 ‘지상물’을 말한다. 그런데 이 단어가 他物權(즉, 제한물권)으로서의 지상권이라는 의미를 갖게 된 것은 율리아누스(Iulianus) 이후라고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저자는 율리아누스가 superficies를 언급한 세 개의 개소 중에서 특히 D. 30,86,4에 대한 석의를 시도하면서, 이 개소를 단편적으로가 아니라 D. 30,86 전체의 맥락 속에서 해석하고자 한다. 저자의 최종 결론은 율리아누스는 여기에서 superficies를 지상권의 의미로는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14. Shigeo Nishimura(일본 쿠키 대학), “비채변제에 대한 정교한 사안 해결: Scaev. D. 12,6,67,4 Eine raffinierte Falllösung zur condictio indebiti: Scaev. D. 12,6,67,4”

학설취찬에서 비채변제를 다루고 있는 제12권 제6장 중에서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개소(D. 12,6,67)는 스카이볼라(Scaevola)의 학설집(digesta) 제5권으로부터 발췌된 것인데, 저자는 그 중에서도 마지막 단편인 제4항에 대한 상세한 釋義를 한다. 이 개소는 미성년자(minor)가 이자부 소비대차로借金を 한 경우 이자의 원상회복(in integrum restitutio)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지금까지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단편이다.

저자는 채권 양도 이후의 원상회복이라는 관점에서 이 개소를 설명함으로써, 이 개소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의 입장과는 상당히 다른 결론에 도달한다.

15. Martin Pennitz(오스트리아 인스브룩 대학), “공화정기 및 초기 원수정기 로마의 피난처의 법적 기능 Die rechtliche Funktion von Asylstätten in Rom zur Zeit der Republik und des frühen Prinzipats”

몸젠(Theodor Mommsen)과 벵거(Leopold Wenger)에 의한 전통적 견해에 따르면, 로마인들은 예로부터 避難權(Asylrecht)을 인정하지 않았고, 노예

가 황제상으로 도피하거나 황제 그림을 소지하는 피난 풍속에 대해 법률가들은 부정적 태도를 취했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입장에 반대하는 새로운 연구들이 등장했고, 저자 역시 이러한 입장에서 여러 증거를 제시하면서 전통적 견해를 반박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저자는 이러한 피난권이 노예뿐만 아니라 자유인에게도 인정될 정도로 로마에서 확고하게 자리잡았다고 지적한다.

16. Pascal Pichonnaz(스위스 프라이부르크 대학), “손해의 제한: ‘물건 그 자체에 관한(circa ipsam rem)’ 및 D. 19,1,21,3: 몇몇 통시적 속고 Die Begrenzung des Schadens: »circa ipsam rem« und D. 19,1,21,3: Einige diachronische Überlegungen”

몇 년 전 스위스 연방대법원은 판매된 6 마리의 앵무새가 바이러스 감염으로 죽은 사건에서 매도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는데, 이때 판결문은 뽀띠에(Pothier)를 인용했고 한 마리의 소가 전체 소 떼를 감염시킨 사례를 언급했다. 이 판결이 계기가 되어 저자는 (한국 민법의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구별에 상응하는) 물건 그 자체(circa rem ipsam)의 손해와 물건 외부(extra rem)의 손해를 구별하는 기원이 되는 율피아누스의 유명한 개소, D. 19,1,21,3를 매매계약에 있어서의 손해의 구분이라는 측면에서 재검토하게 된다.

저자는 우선 이 개소에 대하여 석의한 후, 유스티니아누스 법에 와서 어떤 변화가 이루어졌는지 언급하고, 이어서 중세에서부터 뽀띠에에 이르는 학설의 변천 과정을 살펴본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프랑스법 및 그것을 계수한 입법들이 뽀띠에의 입장을 따른 반면, 판덱텐 법학에서는 이와는 다른 ‘상당인 과관계론’이 등장했음을 지적한다.

17. Daisuke Shinomori(일본 카나가와 대학), “돼지의 유언: 노예가 작성한 유언? Testamentum porcelli: Ein von Sklaven errichtetes Testament?”
4세기 중반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되는 이 ‘돼지의 유언’이라는 약 300 단

어로 이루어진 문헌은 유언을 패러디한 것이라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 2차 대전 이후에는 두 명의 로마법학자, 즉 Alvaro D'Ors 그리고 David Daube에 의하여 이 문제의 해명을 위한 큰 발전이 이루어졌는데, 저자는 그 이후의 연구 성과들을 반영하여 현재의 관점에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한다. 이것은 군인의 유언으로 보았던 Daube와는 달리 저자는 이것이 노예에 의해 작성된 유언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18. Boudewijn Sirks(영국 옥스포드 대학), “D. 9,2,54 및 55에서의 아퀼리우스 법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그리고 D. 9,2,56에 대한 논평 Zum Schadensersatzanspruch bei der Lex Aquilia anhand von D. 9,2,54 und 55 und eine Bemerkung zu D. 9,2,56”

저자는 D. 9,2,54-56에 대한 釋義를 시도하는데, 이 세 개소는 모두 아퀼리우스 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D. 9,2,54에서는 문답 계약을 통해 약속한 동물이나 다치거나 죽은 경우 그것이 이행지체 전에 혹은 후에 일어났는지를 다룬다. 이어서 D. 9,2,55는 이행지체 전에 노예가 살해된 경우를 다루고 있다. 끝으로 D. 9,2,56는 아내가 남편의 물건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 아퀼리우스 법이 적용된다는 내용이다. 저자는 이 세 개소에 대한 석의를 통하여 석의 작업이 가지는 여러 난점을 드러내고자 시도한다.

19. Akira Sugao(일본 쿠슈 국제 대학), “2배액 초과 이자: 어떤 이자가 원본의 2배액으로 산정되는가? Usurae ultra alterum tantum: Welche Zinsen sind zum duplum des Kapitals gerechnet?”

‘usurae ultra alterum tantum’는 법리는 이자가 원본을 초과하면 더 이상 이자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로마에서는 원래 연 12%가 허용되는 이자의 상한이었다가, ‘이자의 이자(usurae usurarum)’에 대한 금지가 도입되었고, 최종적으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에 의하여 이자의 합계가 원본을 초과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이 논문은 이 이자 합계의 제한과 관련된 개소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20. Yoshihiro Tabata(일본 오사카 경제 대학), “하자담보 책임과 채무불이행 책임 Sachmängelhaftung und Nichterfüllungshaftung”

이 논문은 한국 민법학계에서는 물론이고 일본에서도 오랫동안 논쟁거리였던 채무불이행 책임과 매도인의 담보책임 사이의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한다. 이를 위하여 저자는 우선, 독일의 채권법 개정 이전과 이후에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언급한다. 이어서 로마법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를 요약한 후, 일본에서의 논의를 소개한다. 끝으로 저자는 일본의 민법 개정 작업에 있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지에 대해서 검토한다.

21. Minoru Tanaka(일본 난잔 대학), “한번 상속인이면 영원히 상속인이다: D. 4,4,7,10 und D. 28,5,89에 대한 인문주의자들의 주해 Semel heres semper heres: Kommentare der Humanisten zu D. 4,4,7,10 und D. 28,5,89”

“한번 상속인이면 영원히 상속인이다(Semel heres semper heres)”이라는 유명한 법언은 우리 민법의 성년의제에 관한 규정(제826조의2: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에도 그 흔적이 남아 있지만, Max Kaser 및 Antonio Guarino와 같은 로마법학자들의 견해로는 로마로부터 유래하는 것이 아닌데, 이에 대해서는 반론도 존재한다.

이 문제에 답을 하기 위하여 저자는 이 법원이 인용되고 있는 두 개의 대표적인 개소(D. 4,4,7,10 및 D. 28,5,89)를 석의하고, 특히 이 과정에서 근대 인문주의자들의 입장을 상세히 원용한다.

22. Norio Tanaka(일본 쿠슈 대학), “사인증여의 철회권의 포기에 관하여 Zum Verzicht auf das Widerrufsrecht bei der Schenkung von Todes wegen”

일본 민법 제550조는 우리 민법 제555조와 마찬가지로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는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 민법 제554조는

우리 민법 제562조와 마찬가지로 사인증여에 관해서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서면으로 합의된 사인증여가 임의로 해제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학설의 대립이 있다. 최고재판소의 판례에 따르면, 사인증여에도 유언의 철회에 관한 일본 민법 제1022조(우리 민법 제1108조와 동일)가 준용되므로 증여자는 사인증여를 언제라도 철회할 수 있게 된다(우리 대법원의 입장은 이와는 다르고, 학설은 나뉘어 있다).

저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된 로마법의 사료를 검토한 후, 사인증여라는 개념이 오늘날에는 무용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즉 저자는 임의 철회권을 가진 사인증여는 일종의 유증으로, 임의철회권이 없는 사인증여는 생전증여로 파악하자는 입장을 결론으로 제시한다.

23. Kazunori Uemura(일본 쿠루메 대학), “고등안찰관 고시의 규범 구조에 관하여. D. 21,1,14,9 및 D. 21,1,28의 釋義 Zur Normstruktur des Edictum aedilium curulium. Exegese von D. 21,1,14,9 und D. 21,1,28”

현행 민법에 로마법이 미친 영향을 얘기하자면 끝도 없을 것이지만, 가장 눈에 떨 만한 몇 개를 꼽으라면 그 가운데에 ‘때때에 있어서의 하자담보책임’을 꼭 넣고 싶다. 이는 우리 민법 체계 내에서 여전히 뜨거운 감자이기도 한데, 바로 로마에서의 市場을 관할하는 안찰관의 고시로부터 유래한 것이다. 담보책임에 관한 논의는 이미 상당히 많지만, 우리 민법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도 여전히 더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논문에서는 안찰관 고시와 관련된 로마법대전의 개소 중 두 개를 다룬다.

그 첫 번째는 하자담보책임을 당사자의 합의로 면책하는 경우인 D. 21,14,9이다. 안찰관의 고시 내용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을 그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다. 물론, 그러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스스로 하자를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위와 같은 합의를 한 경우에는 여전히 책임을 진다. 이러한 논리는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숨은 하자에 대한 담보를 포기하는 대신 가격 등 다른 면에서 협상을 할 수 있다. 로마인의 합리성을 고려할 때 얼마든지 상정 가능한 상황이다.

다음으로는 매도인이 어떠한 언명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안찰관이 소권을 부여하는 사례인 D.21,1,28.을 검토한다. 이 개소는 길지 않은데, 그래서 오히려 고려할 점이 많을지도 모른다.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인수하는 언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책임을 진다고 보는 근거는 무엇일까? 여기서의 제소기간이 일반적인 경우(매도인이 언명하고 그에 반하는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보다 짧은 이유는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이 논문은 중세 이후의 논의를 간략히 정리하고 어느 정도 수긍할 만한 답을 주고 있다. 안찰관의 고시는 하나의 모범 규율(eine Musterregelung)일 뿐이고 그에 따라 매도인의 언명이 강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상황에서 당사자들의 이익, 의사 그리고 매매에서의 등가성 등이 고려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것은, 왜 저자는 안찰관 고시에 관한 여러 개소 중 위 두 개를 선택했을까 하는 점이다. 안찰관의 고시에 따라 言質, 言明한 경우, 그에 반하는 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일반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다루어지는 개소들은, 그 고시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그를 따르지 않은 경우, 또 그러한 경우에도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을 살펴봄으로써 저자는 원칙과 예외, 일반적인 경우와 특수한 경우를 단계 별로 살펴보고 싶었을 것이다. 또한 두 개소 사이의 내용상의 차이를 밝힘으로써, 서로 다른 효과에 대한 추론도 이어갈 수 있다.

이러한 의도는 어느 정도 효과를 본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 결론에서의 논의는 안찰관 고시와 그를 둘러싼 당사자들의 이해관계, 또 그러한 상황을 고려한 법리를 단계별로 혹은 경우의 수에 따라 잘 정리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도 간략하기는 하지만 안찰관 고시와 관련된 하나의 완결된 像을 제시해주는 논문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승수]

24. Shiro Yanata(일본 쿄슈 대학), “The Burden on the Share of Common Property after Dividing Common Property”

이 논문은 공유물이 분할된 후에도 공유자 중 1인이 설정한 부담(용익권 혹은 담보권)이 지분 비율에 따라 전체 공유물에 미친다는 로마의 법리의 발전상을 보여 준다. 그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D. 33,2,31 Lab. 2 post. A. Iav. Ept.에 관한 석의가 그 중심을 이루는데, 그와 관련된 시대별 법률가들의 논의를 통하여 그 논의의 전개 과정 및 그와 관련된 구체수단의 발전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먼저, 위 개소에 담겨진 각 법률적 주장의 주체가 되는 법률가를 파악한다. Trebatius의 주장에 반대한 사람은 Labeo인가 아니면 Iavolenus인가. 그 이후의 법률가들은 누구의 의견을 계승 발전시켰는가. 이와 같은 의문에 대하여 내용 분석 및 언어적인 분석을 통하여 답을 도출해 나간다. 그러한 논의 과정에서 다른 로마법의 개소들도 인용하고 간단히 그 내용을 검토해본다. 여기에 있어서는 용익권이 아닌 저당권이 주된 논의의 대상이 된다.

결론에서는 이와 같은 논의를 시대순으로 정리해 둔다. 시대의 변화에 따른 이론적인 발전을 한눈에 볼 수 있다. 특히, 애초의 부담과 관련이 없는 공유자에 대한 구체수단의 변화가 눈에 띈다. 다만, 각 법률가들의 결론을 넘어서서 그 근거를 살펴보는 못하여 그 점은 다소 아쉽다. 결론의 차이가 단순히 현실적인 것을 중시하는 견해와 이론적인 것을 중시하는 것과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것일까? 또한 혹시 용익권과 담보권의 경우 서로 다르게 붙여지는 없는가?

어쩌면 이는 다시 새로운 연구를 위한 단초가 될 수도 있겠다. 이 논문의 각주에도 제시되듯이 독일 민법 제1066조 제3항은 공유지분에 용익권이 있다가 분할되는 경우 용익권자는 (다른 공유자의 소유가 된 기존의 지분이 아니라) 그 代償에 대하여 용익권을 취득한다. 즉, 지분권자가 분할에 의해 취득한 부분에 대하여 용익권을 가지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담보물권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 다수의 견해는 로마의 다수설과 일치한다(용익권에 대하여는 언급된 예를 찾기가 쉽지 않다). 우리 판례의 태도(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다30603 판결 등)도 마찬가지이다. 로마의 경우도, 우리의 경우도, 그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 근거를 자세히 보다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러한 논의를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본 논문은 좋은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고 생각된다. [한승수]

25. Lihong Zhang(중국 화동정법 대학), “시민법상 사실소권에 관한 연구 Studies on Actio in Factum Civilis”

일반적으로 볼 때 사실소권(actio in factum)은 시민법상의 소권(actio civilis)이 인정되지 않지만 법정관(practor)가 형평을 이유로 하여 부여하는 소권이다. 따라서 이 두 가지는 서로 대립하는 개념이므로, ‘시민법상 사실소권(actio in factum civilis)’라는 용어는 일종의 형용모순이 되는데, 학설휘찬에서는 이 표현은 3개의 개소(D. 19,5,1-3)에서 사용되고 있다. 저자는 위 개소들의 석의를 통하여 이 소권의 의미를 해명하고자 시도한다.

저자의 결론에 따르면 위 세 개의 개소는 고전법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즉, 수정되지 않았다). 라베오(Labeo)는 시민법상 인정되는 권리이지만 그에 대하여 직접소권(actio directa)을 부여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 시민법상 사실소권을 인정했으나, 그의 용어법은 다른 법률가들에 의하여 대체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로지 율리아누스(Julianus)만이 이 용어를 사용했으나 라베오와는 다른 의미에서, 즉 준소권(actio utilis)의 동의어 정도로 이 용어를 사용했으며, 아리스토(Aristo)나 마우리키아누스(Mauricianus)와 같은 다른 법률가들은 이 용어 대신에 actio praescriptis verbis 또는 actio incerti civilis와 같은 용어를 더 선호했다고 한다.